

재정위원회 운영 규정

제정 : 2024. 1. 5.

담당 : 전략기획실(02-950-5424)

----- 목 차 -----

제1조(목적)	제2조(기능)	제3조(구성)	제4조(임기)
제5조(위원장 등 직무)	제6조(회의 운영)	제7조(예산관리 소위원회)	제8조(회의록)
제9조(운영세칙)			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성서대학교의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한 재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재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대학 중·장기 재정운영계획에 관한 사항
2. 대학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대학운영 계획 중 재무경영과 관련된 사항
4. 그 밖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총장으로 한다.

③ 당연직 위원은 부총장, 대학원장, 학사 부총장, 일립행정본부장, 입학·학업지속지원본부장, 전략기획실장으로 구성한다.

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운영을 보조하기 위하여 기획팀장을 간사로 둔다.

제4조(임기) 재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 범위 내에서 정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수행기간 내로 한다.

제5조(위원장 등 직무) ① 위원장은 재정위원회를 대표하며 재정위원회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총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회의 운영) ① 재정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장이 재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

없으면 재정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③ 재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예산관리 소위원회)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관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예산관리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심의 경과와 결과를 서면 또는 구두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예산관리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.

제8조(회의록)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그 회의록은 위원장 및 출석위원 1/2의 서명을 하여야 한다.

제9조(운영세칙) 재정위원장은 이 규정에서 정해지지 않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재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24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.